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517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별표7의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설' 중 창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창고의 기준을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제3조제31호 및 제32호”를 “제3조제33호 및 제34호”로 한다.

제2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를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로, “같은 법 제33조제7항”을 “같은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23조의2제1항·제4항”을 “제23조의6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을 “시행규칙 제23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을 “시행규칙 제23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을 “시행규칙 제23조의6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인 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추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 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장 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cm²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m³/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5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표지)

(표지 뒷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기후에너지환경부

80mm × 130mm (인쇄 용지 120g/ m²)

주의사항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자격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인적 사항, 주소, 자격취득 사항, 취업 중인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기하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80mm×130mm(인쇄용지 120g/㎡)

(제1면)

신상변동사항(제2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자격번호 : 제 호

성명:

 $\frac{C}{H}:$

생년월일:

주소:

사진

 $(3.5 \times 4.5 \text{ cm})$

자격 취득일: 년 월 일

부속 1의 : 표 1의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직인

※ 소정의 직인, 실인 및 철인(천공)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80mm×130mm(인쇄용지 120g/㎡)

[illegible]

80mm×130mm(인쇄용지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		제3조제33호 및 제34호-----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		-----.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1. -----		-----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
		-----		----- 같은 법 제33조제9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2. (생략)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제23조의2제1항·제4항</u>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생략)	----- ----- -----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1. <u>제23조의6제1항·제4항</u> --- ----- ----- ----- ----- 2. (현행과 같음)
---	--